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3
----------	-------

발의연월일 : 2026. 5. 20.

발 의 자 : 김상훈 · 강대식 · 고동진
조지연 · 박충권 · 이헌승
김장겸 · 안철수 · 이종욱
유용원 · 박대출 · 이달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

제1항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선불충전금”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을 말한다.

나. 휴면선불충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의 선불충전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 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나.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

제24조제1항제12호 중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를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휴면선불충전금의 경우: 휴면선불충전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충전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권리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 단서 중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u><신 설></u></p> <p>나. (생 략)</p> <p>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u>2의2. “선불충전금”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을 말한다.</u></p> <p>3.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휴면선불충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의 선불충전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u></p> <p>다. (현행 나목과 같음)</p> <p>4.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5. ~ 8. (생략)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1. (생략)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운용

13. ~ 16. (생략)

② ~ ④ (생략)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생략)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 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나.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

5. ~ 8.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2.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
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
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또는 무
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
선불충전금-----

② (현행과 같음)